

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2-37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시외버스 이용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, 유료화에 따른 이용률 저조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가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의된 용어로 정비(안 제9조제1항·제2항)

- 1) 노상주차장 및 직영노외주차장 ⇒ 공영주차장
- 2) “공영주차장”이란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.(현행 제2조제1호)

나.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(안 제9조제3항)

- 1) 공익목적의 사유: 교통의 원활한 소통,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, 공중의 편의와 안전 도모
- 2) 감면율: 면제 또는 100분의 50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주차장법」 제9조·제14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2. 1. 28~2. 18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”을 “공영주차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4조에서 규정한”을 “제4조에 따른”으로 “제3조에서 규정한”을 “제3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”을 “공영주차장”으로 “2분의 1”을 “100분의 50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.

1. 교통의 원활한 소통
2.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
3. 공중의 편의와 안전 도모

제16조제1항 중 “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”을 “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제목 및 앞면 중 “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”을 “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요금의 감면) ① <u>노상 및 직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</u> 1.~3. (생략)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,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5. (생략) ② <u>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.</u> 1.~8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제16조(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) ① <u>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<u>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</u>을 교부하여야 한다.</u> ② (생략)</p>	<p>제9조(요금의 감면) ① <u>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</u> 1.~3. (현행과 같음)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,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5. (현행과 같음) ② <u>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</u> 1.~8.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.</u> 1. <u>교통의 원활한 소통</u> 2. <u>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</u> 3. <u>공중의 편의와 안전 도모</u></p> <p>제16조(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) ① <u>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<u>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</u>을 교부하여야 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</p>